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의안번호 제2024-38호>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4. 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24년도말 조성액 ⑤=④+①	비고
	수 입 ②	지 출 ③	증감 ④=②-③		
329,154	32,000	28,330	3,670	332,824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4년도말 조성액①	융자금 미회수채권 ②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③	총 조성규모 ④=①+②-③
332,824	-	-	332,824

○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수입변경계획				지출변경계획			
항 목	변 경 수입액	당 초 수입액	증 감	항 목	변 경 지출액	당 초 지출액	증 감
합 계	361,154	355,154	6,000	합 계	361,154	355,154	6,000
예치금 회 수	329,154	329,154	0	비용자성 사 업	28,300	8,600	19,700
이자수입	3,000	3,000	0	예치금	332,824	346,554	△13,730
기타수입	23,000	23,000	0	기타지출	30	0	30
국 고 보조금등	6,000	0	6,000				

4. 검토의견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3. 9. 조례(조례 제1967호)로 제정되었음.
-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3년도말 329,154천원 대비 3,670천원이 증액된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32,824천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률 및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영되어야 하며,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물 구입,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간담회, 불법, 무연고 간판철거 등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